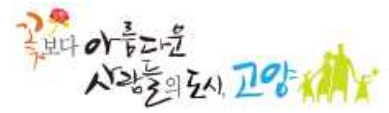


【제 1304 호】



2016년 9월 2일 (금)

고양시보

차 례

입법예고

고양시 공고 제2016-1340호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1

고 시

고양시 고시 제2016-221호 도시계획시설(광로3-6호선)사업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 변경) 결정 및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고시 34

고양시 고시 제2016-222호 도로명주소 고시 39

고양시 고시 제2016-223호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(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) 변경 고시 42

공 고

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-184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52

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2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

2. 제정이유

- 「고양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협회의 설립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관광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함.(안 제4조)
- 나. 법인설립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에 따른 구비서류와 절차를 규정함.
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- 다. 법인사무의 검사·감독의 근거를 규정함.(안 제9조)
- 라. 법인 설립 취소와 해산 등의 절차를 규정함.(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)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6년 9월 19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신한류관광과)

○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

○ 전 화 : 신한류관광과 의료관광팀(031-8075-3406)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자치법규명 :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
- 성명(단체명) :
 - 주 소 :
 -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견	비 고

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양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협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(이하 “법인“이라 한다)의 설립 허가,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경기도 관광협회와의 관계) 법인은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관광협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한다.

제4조(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) 「고양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14조제3항 제2호에 따른 “그 밖에 지역관광 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”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고양관광(의료관광)안내센터 및 관광홈페이지 관리·운영
2.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판매·운영
3. 고양 시티투어, 캠핑장, 전기기차, 인력거 등 관광시설 운영
4.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워킹가이드 관리 운영
5.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

제5조(설립허가의 신청) 「고양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설립발기인“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설립허가) 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

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.

1.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
2.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
3.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,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
4.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

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,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7조(설립관련 보고)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은 「민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정관변경의 허가 신청) 법 제42조제2항,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법인사무의 검사·감독)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·장부,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설립허가의 취소)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해산신고) 법인이 해산한 때(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그 청산인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잔여재산처분의 허가)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,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·수량·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청산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,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신한류관광과
입 안 자	과 장 직위·성명	신한류관광과장 신 승 일
	팀 장 직위·성명	의료관광팀장 김 형 기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형 기 (031-8075-3406)

[별지 제1-1호서식]

발 기 인 명 단

성 명	생 년 월 일	주 소	약 력	비 고

※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, 생년월일·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.

재 산 총 괄 표(목록)

총 계							
1. 기 본 재 산	구 분	소재지	수량	평가액(원)	설립년도 수익액	취득원인	비고
	건 물						
	토 지						
	출연금	-	-				
	소 계	-	-				-
	2. 운 영 재 산	품 목	종 류	수 량	금 액 (현재가액)	설립년도 수익액	취득원인
현 금		-	-				
컴퓨터		○○	○대	○○만원			
차 량		○○	○대	○○만원			
소 계		-		○○만원			-

위 사실을 확인함
20

고양시 관광협의회장 (인)

고양시장 귀하

☞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제출

[별지 제1-3-1호서식]

운 영 재 산 세 부 현 황

1. 총 괄

(년 월 일 현재)

구 분	수 량	평 가 액	비 고
예 금			
주 식			
채 권			
부 동 산			
기 타			
총 계			

2. 분류별 세부내역

재 산 명	종 류	수 량	평가액(원)	비 고
총 계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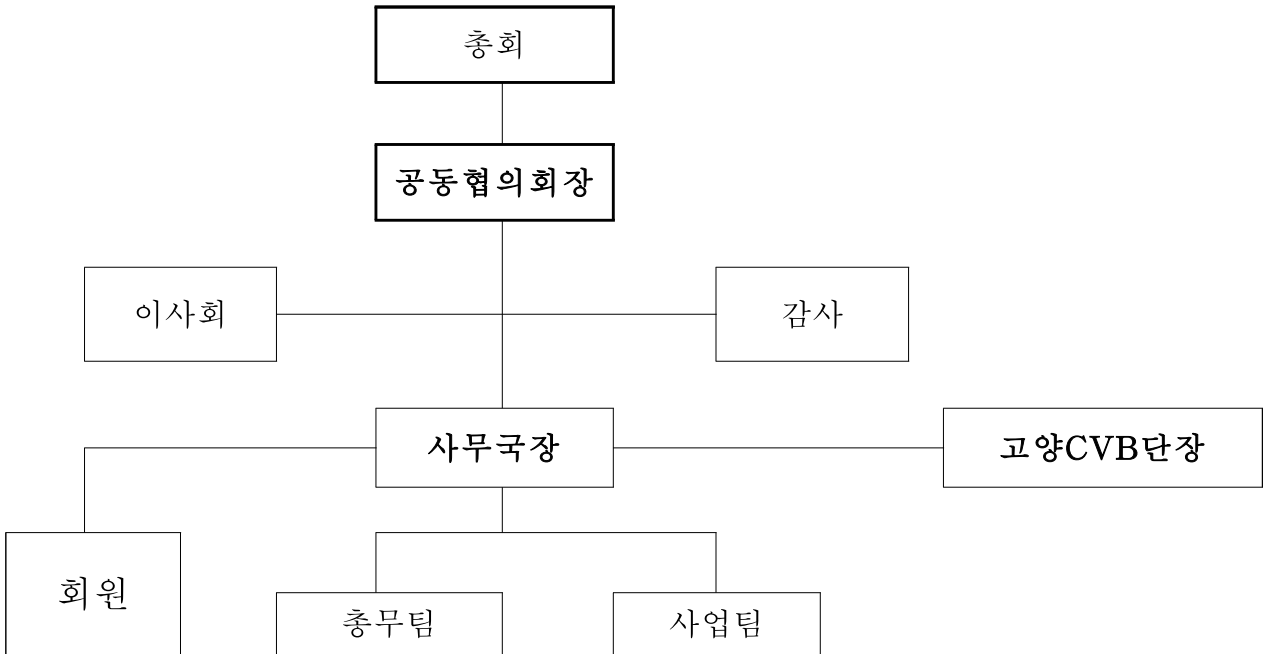
- ※ 1) 운영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
- 2)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
- 3)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

사 업 계 획 서

1. 사업개시 예정표
2. 직종 및 정원
3. 직원채용계획
4. 건물, 대지 및 임대
5. 장 비
6. 시 설
7. 세입세출 예산서
8. 기타 법인 운영 관련사항

1. 사업개시 예정표

- 1) 사업개시 예정일 :
- 2) 사업개시 준비기간 :
- 3) 운영조직 계획표(예시)



2. 상근직원

직위	성명	담당사무	학,경력	비고
계	○명			

3. 회원관리계획

구분	인 원(명)	회비수준(원)	회원자격
특별회원			
일반회원			
계			

4. 건물, 대지 및 임대

구 분	소재지(지번, 지목)	수 량 (㎡)	단가 (원)	금액 (원)
건 물 대 지 임 대				
계				

5. 장 비

구 분	장 비 내 역	수 량	단 가 (원)	금 액 (원)
사무용	컴퓨터 복사기 등			
기 타	업무용차량 등			
합 계				

6. 시 설

시 설 내 역	면적(㎡)	수 량	평가금액 (원)
사 무 실 교 육 실 컴 터 진 료 실 등			
합 계			

7. 세입세출 예산서

가. 세 입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예산액 (2016)	산 출 기 초	비 고
관	항	목			
재산수입	기본재산수입	대가료			
잡수익	기부금 수입	기부금			
.	.	.			
.	.	.			
.	.	.			
.	.	.			
세입합계					

나. 세 출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예산액 (2016)	산 출 기 초	비 고
관	항	목			
재산수입	기본재산수입	대가료			
경상비	인건비	임 금			
.	.	.			
.	.	.			
.	.	.			
.	.	.			
세출합계					

8. 기타 법인 운영 관련 사항

-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 구체적 요약 작성

취 임 승 낙 서

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(인)

설립자 ○○○ 귀하

본인은 금번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회의
이사(임기○년)에 취임 할 것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생 년 월 일 :

성 명 : (인)

[별지 제1-6호서식]

“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총회 회의록” (예시)

1. 일 시 : 년 월 일
2. 장 소 :
3. 출석위원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(성명기재)
4. 결석위원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(성명기재)
5. 안 건
 - 제1호 의안 : 설립취지선택(안)
 - 제2호 의안 : ○○법인 명칭제정(안)
 - 제3호 의안 : 정관(안)
 - 제4호 의안 : 임원선임(안)
 - 제5호 의안 : 법인사업계획서(안)
 - 기타 안건(있을시 상정)
6. 회의내용

발 언 자		회 의 진 행 사 항
사회자	* * *	발기인 ○명 중 ○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.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.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발기인(A)	* * *	* * *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.
발기인(B)	* * *	재청입니다.
발기인(C)	* * *	삼청입니다.
사회자	* * *	이의 없습니까?
발기인 (전원)		(이의없음을 표명하다)
사회자	* * *	그럼, * * *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 겠습니다.
임시의장	* * *	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금일 안건으로 ○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.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간사 000님께서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발 언 자		회 의 진 행 사 항
간사	0 0 0	(설립취지문 낭독)
임시의장	* * *	간사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
		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.
		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(안)을 상정하겠습니다.
		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발기인(D)	* * *	본 법인의 명칭은 ...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○○○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.
발기인(A)	* * *	재청입니다.
발기인(F)	* * *	삼청입니다.
임시의장	* * *	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○○○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?
발기인	(전원)	(이의없음을 표명하다)
임시의장	* * *	그럼,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○○○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		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(안)심의가 있겠습니다.
		간사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간사	0 0 0	(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)
임시의장	* * *	간사 000의 정관(안)설명이 있었습니다
		본 정관(안)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발기인(E)	* * *	제5조의 ...는으로 하는 것이 더....
발기인(B)	* * *	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좋을 듯 싶습니다.
임시의장	* * *	그러면 정관 제5조의 ...는 ...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?
발기인	(전원)	(이의없음을 표명함)
임시의장	* * *	정관 제5조는 ...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.
		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?
		없으시면 정관(안)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		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.
		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.
발기인(C)	* * *	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* * *을 추천합니다.
발기인(A)	* * *	재청입니다.
발기인(B)	* * *	삼청입니다.
발기인	(전원)	(* * *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)
이사장	* * *	(인사말씀)
		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
		(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)
		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진행하여 나머지(안) 처리

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.

년 월 일

발기인 대 표 ○ ○ ○ (인)

발기인 ○ ○ ○ (인)

발기인 ○ ○ ○ (인)

제 호

법인설립허가증

- 1. 법인 명칭:
- 2. 소재지: 경기도 고양시
- 3. 대표자
 - 성명:
 - 생년월일:
 - 주소:
- 4. 사업내용:
- 5. 허가조건: 뒷면에 기재

「민법」 제32조,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, 「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고양시장

직인

(뒤 쪽)

5. 허가조건:

<변경 사항>

일 자	내 용	확인

[별지 제3-1호서식]

정관변경사유서 (예시)

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나
. 위하여 정관 제○조 중 “이사 7명”
을 “이사 9명”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(인)

고양시장 귀하

법인변경 사항보고

법 인 일 반 개 요	법인명				대 표 자		
	소재지				전화번호		
정 관 변 경 현 황	변 경 전			변 경 후			
소 재 지 변 경 현 황	변 경 전			변 경 후			
재 산 변 동 현 황	구 분	증 가 전			증 가 후		
	계						
	기본재산						
	운영재산						
임 원 변 경 현 황	구 분	직 위	성 명	생년월일	임 기	사유	
	변 경 전						
	변 경 후						

[별지 제3-2호서식]

정관 변경 신·구 대비표

현행 (구)	개정 (신)
제○조 ※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	제○조

사단법인 점검표			
법인명		대표자	
소재지		전화번호	
설립허가번호	설립허가일		
■ 법인사무			
검토항목	검 토 사 항	적합여부	추진실태
I. 민법 제97조	1.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		
	2.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		
	3.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		
	4. 파산신청 해태 등		
II. 목적사업의 이행	1.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		
	2.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		
	3.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		
III. 수익사업의 적정성	1. 과도한 입장료, 참가비 등 부과 여부		
	2.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		
IV. 위탁사업 운영	1.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		
	2. 회계의 부정, 부실 운영으로 감사,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		
	3.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		
V. 임원 등	1. 임원·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		
	2. 이사회적 적법한 운영 여부		
VI. 사업계획의 이행 등	1.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		
	2.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		
	3. 허위 분원 운영,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		
VII. 정관변경 등	1. 이사의 임면,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		
	2.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		

(사단법인)청산인 선정신고서

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

「민법」 제82조에 따라 해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청산인 성명	생년월일	주소

고양시장 귀하

※ 기타사항

- 선정근거 :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
- 청산인 직무
 -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
 - ② 현존사무의 종결
 - ③ 채권의 추심
 - ④ 채무의 변제
 - ⑤ 잔여재산의 인도
 -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
-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
(제한내용 :)

고양시 고시 제2016-221호

도시계획시설(광로3-6호선)사업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 변경) 결정 및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고시

1.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35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광로3-6호선) 사업에 대하여 이케아 신축공사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 등의 사유로 이케아 코리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,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6조,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32조(지형도면 고시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(☎031-8075-314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2016년 9월 2일
고 양 시 장

1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35-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광로3-6호선)사업
- 명칭: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내 이케아 신축공사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○ 면적 : 16,014㎡

구 분	결정면적(㎡)			금회 시행면적(㎡)	비 고
	당초	변경	변경후		
계	80,456	증) 356	80,812	16,014	
도로(광로 3-6호선)	80,456	증) 356	80,812	16,014	

※ 변속차로 설치 등에 따른 법면발생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음.(356㎡ 신규편입)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직로 17
- 성명 : 이케아 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자 안드레 슈미트갈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예정일 : 2017년 7월 31일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“별첨” 조서와 같음

2. 도시관리계획(경미한사항) 결정(변경) 사항

■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

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폭원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								
기정	광로	3	6	30~60	주간선 도로	4,960	광장47 강매동658	대로1-9 원흥동 178-7	일반도로		건고제570호 71-09-27	
변경	광로	3	6	30~60	주간선 도로	4,960	광장47 강매동658	대로1-9 원흥동 178-7	일반도로			변속차로 설치

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사유
광로3-6	광로3-6	· 폭원 및 연장 : 변경없음 · 356㎡ 신규편입	· 원흥지구내 이케아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결과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법면발생 등으로 356㎡ 신규편입

3. 관계도면 : “계재생략”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

(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)

구분	위치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권리자		
				지적	편입	주소	성명	권리구분	주소	성명
계	56필지			49,968	16,014					
1	덕양구 도내동	산35-1	임	1,862	389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	"	산35-3	임	78	65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3	"	496	전	909	53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4	"	496-6	임	2,407	1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5	"	497-3	전	2,435	389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6	"	498-1	전	71	2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7	"	499-1	전	541	256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8	"	500-1	전	1,245	218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9	"	500-2	전	1,118	182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
구분	위치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권리자		
				지적	편입	주소	성명	권리구분	주소	성명
10	덕양구 도내동	500-5	전	28	1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11	"	500-6	전	116	6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12	"	501	전	871	218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13	"	501-2	전	1,523	7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14	"	502	전	15	15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15	"	502-2	전	1,140	6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16	"	506	전	1,071	665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17	"	506-1	전	324	27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18	"	506-2	전	48	43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19	"	506-3	전	1,180	29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0	"	506-5	전	372	4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1	"	507	전	1,140	554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2	"	507-2	전	641	18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3	"	508-3	전	848	3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4	"	518-3	전	126	41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5	"	518-5	전	648	78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6	"	518-6	전	791	163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7	"	518-8	전	2,443	1,126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8	"	519-25	답	168	153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29	"	519-26	답	58	1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30	"	521-1	전	1,772	2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31	"	522	전	1,498	466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32	"	523	전	793	174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33	"	523-1	임	1,817	7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76	김민규			
						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0-12	김영분			
						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4 장성마을 30-702	김승규			
						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6-3 동문빌라 나-101	김용규			
						광명시 광명동 96-4 태양빌라 101	선순숙			

구분	위치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권리자		
				지적	편입	주소	성명	권리구분	주소	성명
34	덕양구 도내동	523-2	임	3,833	1,940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35	"	524	전	2,033	1,207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36	"	524-1	전	2,033	1,024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37	"	525-1	전	1,732	1,195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38	"	525-3	잡	45	2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39	"	525-4	전	2	1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40	"	526-1	전	112	112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41	"	526-4	전	305	175	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402-5	원기섭			
42	"	526-12	전	617	615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43	"	526-13	대	184	34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44	"	526-14	전	17	8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45	"	527-8	임	80	80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46	"	527-9	임	431	178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47	"	561-5	전	804	322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48	"	561-6	전	485	206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49	"	562	전	654	131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50	"	809	전	912	3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
51	"	898-2	도	178	30		국토교통부			
52	"	898-3	도	360	226		국			
53	"	899-10	구	3,212	1,361		국토교통부			
54	"	900	도	188	44		국토교통부			
55	"	1126	도	1,653.5	1,653.5		고양시			
56	"	미부여 번지			39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
■ 도시관리계획 신규 편입조서

구분	위치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권리자		
				지적	편입	주소	성명	권리구분	주소	성명
계	13필지			7,956	356					
1	덕양구 도내동	496-6	임	2,407	1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2	"	500-5	전	28	1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3	"	500-6	전	116	6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4	"	501-2	전	1,523	7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5	"	502-2	전	1,140	6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6	"	506-5	전	372	4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7	"	523-1	임	1,817	7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76	김민규			
						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0-12	김영분			
						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4 장성마을 30-702	김승규			
						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6-3 동문빌라 나-101	김용규			
						광명시 광명동 96-4 태양빌라 101	선순숙			
8	"	525-3	잡	45	2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9	"	525-4	전	2	1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10	"	526-4	전	305	175	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402-5	원기섭			
11	"	526-13	대	184	34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12	"	526-14	전	17	8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13	"	미부여 번지			39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이케아 용지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제24조제1항, 제25조에 의거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9월 2일

고양시장

- 도로명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83 외 2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일	
별 지 참 조				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변경일	변경사유
별 지 참 조				
폐지 도로명주소		폐지일자	폐지사유	
별 지 참 조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(☎8075-3096~8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9. 2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

연 번	종 전 주소	도 로 명 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고시 일	부 여 사유	비 고
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53-5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41 (내유동)	20160902	20000727	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	
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49-3, 655-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37 (내유동)	20160902	20000727	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	
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1-17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447 (용두동)	20160902	20090710	지명인용	
4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449-4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83번길 62-3 (행주내동)	20160902	20100126	행주로 시점에서 830m에 위치 한 도로	
5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3-39, 53-40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2002번길 83 (동산동)	20160902	20100126	고양대로 시점에서 20020m에 위치한 도로	
6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68-30, 68-40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길 194-7 (내곡동)	20160902	20110715	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7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-29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2길 70-10 (삼송동)	20160902	20110715	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	
8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44-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2길 55 (신원동)	20160902	20120601	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9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44-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2길 59 (신원동)	20160902	20120601	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10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59-8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1길 7 (원흥동)	20160902	20120601	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	
1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51-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1길 52 (삼송동)	20160902	20120601	삼송동과 원흥동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	
1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66-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1길 106 (삼송동)	20160902	20120601	삼송동과 원흥동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	
1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5-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솔밭1길 44-8 (원흥동)	20160902	20120601	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 하여 도로명 부여	
14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5-7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솔밭1길 40 (원흥동)	20160902	20120601	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 하여 도로명 부여	
15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46-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안길 32 (원흥동)	20160902	20131022	삼송동과 원흥동의 한자씩을 도 로명에 활용	
16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117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29-9 (도내동)	20160902	20131108	문화재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17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3-8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맥절길 368-52 (장항동)	20160902	20090911	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	
18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73-2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78번길 19-23 (성석동)	20160902	20100126	고봉로 시점에서 5780m에 위치 한 도로	
19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79-1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78번길 19-24 (성석동)	20160902	20100126	고봉로 시점에서 5780m에 위치 한 도로	

20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06-12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102번길 88 (설문동)	20160902	20100126	문원길 시점에서 1020m에 위치 한 도로	
21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06-13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102번길 86 (설문동)	20160902	20100126	문원길 시점에서 1020m에 위치 한 도로	
22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06-14, 107-19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102번길 84 (설문동)	20160902	20100126	문원길 시점에서 1020m에 위치 한 도로	
23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59-11, 359-17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63-68 (덕이동)	20160902	20090824	옛 철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24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8-2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역절길 196-25 (대화동)	20160902	20090911	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	
25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288-10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244번길 59-21 (덕이동)	20160902	20100126	덕산로 시점에서 2440m에 위치 한 도로	
26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53-6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425번길 92-12 (가좌동)	20160902	20100126	송포로 시점에서 4250m에 위치 한 도로	

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

연번	종전 주소(지번주소)		도로명주소 (새주소)	관련지번 변경일	변경 사유	비고
	변경 전	변경 후				
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3-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78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시 덕양구 동 축로 16	2016.9.2	관련지번 변경	

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	폐지 사유		법정동	비고
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폐지일	폐지 사유	폐지건물 고시 일자		
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83번길 62-3	2016.9.2	신축으로 인 한 건물 멸실	2011.7.29	행주내동	
2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역절길 368-52	2016.9.2	신축으로 인 한 건물 멸실	2011.7.29	장항동	
3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역절길 196-27	2016.9.2	신축으로 인 한 건물 멸실	2011.7.29	대화동	

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(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) 변경 고시

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(C2)의 세부개발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9. 2.

고 양 시 장

□ 실시계획 변경[특별계획구역3(C2) 세부개발계획]

1. 사업의 명칭 (변경없음) :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

2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(변경없음)

- 한국국제전시장(2단계)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전시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동양최대 국제전시장을 건립하여 고양시 도시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고 21C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
- 위치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0번지 일원
- 면적 : 742,709.9㎡

4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(변경없음)

- 시행자 : 고양시장
-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

5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(변경없음)

- 시행기간 : 2006년 ~ 2018년
- 시행방식 : 수용 및 사용 방식

6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)의 변경에 관한사항

(붙임1: 특별계획구역3 변경)

7.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및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

-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14일간
- 공람방법 :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(☎ 031-8075-3154) 및 마이스산업과(☎ 031-8075-3515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

붙임1

□ 특별계획구역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

1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(1) 용도지역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28,200.2	-	28,200.2	100.0	
상업지역	28,200.2	-	28,200.2	100.0	
일반상업지역	28,200.2	-	28,200.2	100.0	

(2) 용도지구

■ 용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2. 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■ 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특별계획구역3	일산서구 대화동 2703번지	28,200.2	-	28,200.2	고양시고시 제2009-64호 (2009.3.19)	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

3.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4. 가구 및 획지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5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(1) 건축물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구분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	비고
		기정	변경	
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(소매시장, 상점에 한함) (단, 지정용도의 합이 전체연면적의 50%이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, 다목 상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, 다목 상점 	
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, 자목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(기원 제외) 내지 다목, 라목(실내낙시터 제외), 마목(종교집회장 제외), 바목(부동산 중개업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), 아목, 타목(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 · 숙박시설 중 가목의 호텔, 나목의 가족호텔, 휴양콘도미니엄 ·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, 전시장 ·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· 운동시설 중 가목(실내낙시터, 골프연습장 제외) 내지 다목 · 위락시설(라목 제외) · 방송통신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, 자목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(기원 제외) 내지 다목, 라목(실내낙시터 제외), 마목(종교집회장 제외), 바목(부동산 중개업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), 아목, 타목(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 ·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, 전시장 ·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, 자목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(기원 제외) 내지 다목, 라목(실내낙시터 제외), 마목(종교집회장 제외), 바목(부동산 중개업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), 아목, 타목(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 ·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, 전시장 ·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· 위락시설(유원시설업) 	

주)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.

(2) 건축물의 건폐율·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■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건폐율	· 60% 이하	· 60% 이하	

■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구분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	비고
		기정	변경	
용적률	· 800% 이하	· 210% 이하	· 220% 이하	

■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구분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	비고
		기정	변경	
높이	· 50층	· 6층	· 7층	
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층고는 각 층당 4m이하로 제한 (1,2층 제외) ※ 복합시설의 층고는 각 층당4m이하로 제한(1,2층 제외) 단, 층고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층고제한완화를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층고는 각 층당 4m이하로 제한 (1,2층 제외) · 1~2층: 7m이하 · 3~6층, 옥상층: 6.5m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층고는 각 층당 4m이하로 제한 (1,2층 제외) · 1~2층: 7m이하 · 3~7층, 옥상층: 6.5m이하 	

(3)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■ 건축물의 배치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배치 및 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보행통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배치 · 전면도로변으로 건축물의 전면을 향하게 하되 후면부도 직접 건물로의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보행시설과 연계되는 지점은 보행연결통로가 길어지지 않도록 (특3) 계획구역내 대지 경계선에 근접하게 배치 · 전면도로(광로 2-2호선)변으로 건축물의 전면을 향하게 하되 대로 2-1호선 도로변 건축물의 후면부에서도 직접 건물로의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함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한계선 : 4m 지정(대로2-1호선변, G1, G2 경관녹지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한계선 - 4m지정 (대로2-1호선변, G2경관녹지변) 	

(4)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 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구분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	비고
		기정	변경	
형 태 및 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층부 탑상형 · 개구부 - 20m폭 이상의 도로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하여야 함 - 1층전면개구부에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구부 - 광로2-2호선 및 G2경관녹지변과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계획 - 광로 2-2호선 및 G2경관녹지변 1층 서터는 투시형으로 계획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색채 및 재료 - 고층부(6층이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주조색 : 채도 2이하, 명도 8이상 ■보조색 : 채도 4이하, 명도 6이상 ■강조색 : 제한없음 - 저층부(5층이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주조색 및 보조색 : 채도 4이하, 명도 6이상 ■강조색 : 제한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색채 및 재료 - 고층부(6층이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주조색 : 채도 2이하, 명도 8이상 ■보조색 : 채도 4이하, 명도 6이상 - 주조색 : 아이보리계열 - 보조색 : 회색계열 ■강조색 : 애플그린계열 - 저층부(5층이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주조색 및 보조색 : 채도 4이하, 명도 6이상 범위 - 주조색 : 아이보리 계열 - 보조색 : 회색 계열 ■강조색 : 애플그린 계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색채 및 재료 - 고층부(6층이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주조색 : 채도 2이하, 명도 8이상 ■보조색 : 채도 4이하, 명도 6이상 - 주조색 : 아이보리계열 - 보조색 : 회색계열 ■강조색 : 애플그린계열, 옐로우계열 - 저층부(5층이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주조색 및 보조색 : 채도 4이하, 명도 6이상 범위 - 주조색 : 아이보리 계열 - 보조색 : 회색 계열 ■강조색 : 애플그린 계열, 옐로우계열 	

(5) 대지내 공지 및 동선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가. 대지내 공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전면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(4m) 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(4m) 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 · 위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로2-1호선변, G2경관녹지변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 · 대로 2-1호선변, G2경관녹지변 전면공지의 경우 접해있는 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을 사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 · 전면공지와 도로(보행자도로포함)와의 경계부는 단차 15cm미만으로 설치 ·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2/3이상 구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 	
공개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법 규정에 따름 · 도로교차부, 녹지등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건축법」 제43조에 의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어야 함 · 도로교차부, 녹지등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· 위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로2-1호선변, G2경관녹지변에 접하게 조성 · 형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적: 「고양시건축조례」 제33조에 의거 대지면적의10%이상 - 공개공지는 최소폭 5m이상 계획 - 최소면적은 45㎡이상으로 설치시 과도한 세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· 조성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면가로에 면한 길이 1/2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- 공개공지는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 - 전체면적의 40%이상인 보행자가 이용가능하도록 포장하여 조성 	

나. 대지내 동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공공보행 통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공보행통로 · 실내형 또는 실외형으로써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형의 경우 건물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일정시간 폐쇄할 수 있음 · 최소폭 6m이상으로 조성 ·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방향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위치 및 선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공보행통로 · 구역내 각 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로 2-2호선변에 설치 · 전명공지 및 경관녹지와 연계토록 계획 · 구역내 각 시설간의 연계를 실외형으로써 24시간 개방하여야 하며 최소폭 6m이상으로 조성 ·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주요시설간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내에 통로조성 · 담장, 계단,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금지 · 단, 건축물 구조의 안전상 필요한 구조물은 설치가능 · 접하는 보도와 단 차이를 두지 않게 조성 ·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되, 장식포장을 권장 · 차량동선과 교차시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· 차량동선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은 조경면적에 산입 	
개방형 보행광장 (지상부 공개공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상부일 경우 공개공지로 설치 · 최소규모 300㎡이상의 규모로 건축물 남동측 보행결절부에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함 ·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위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지상공공보행통로와 연결시 공개공지로 조성토록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남동측 경관녹지변에 지상부 공개공지 설치 · 최소규모 300㎡이상의 규모로 건축물 남동측 보행결절부에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함 	
차량출입 불허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로교차부 20~40m구간 차량 출입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로 2-1호선변 양끝 각각 40m, 20m구간 · 중로 1-2호선변 동측 모퉁이변 20m구간 	

(6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<p>대지내 지상주차 장 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상주차장 설치시(20대 이상) 지상 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 통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경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폭 3.0m 이상, 높이 0.5~0.6m의 식수대 설치(차량출입구 부분 제외) - 수고 3m이상, 수관폭 1.5m 이상 교목 : m²당 0.2본 이상 식재 - 식수대의 분리시 폭은 1.5m 이하로 하며 차량출입구는 제외 · 지상주차장 설치시(20대 이하) 지상 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 통로 사이에는 위 기준에 따라 조경 처리를 하거나 1.5m 간격으로 단주 설치 · 부설주차장 중 옥외주차장은 바닥포장재는 잔디블럭 등 투수성 포장재로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사항없음 	
<p>옥상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시장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옥상조경은 권장사항으로 소관목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(벤치, 파고라 등)을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물의 옥상조경은 소관목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 (벤치, 파고라 등)을 설치 · 높이 1m 이하의 소관목 위주로 조성 · 야간조명등 설치 · 2단계 사업추진시 최상부 전체가 옥상녹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 내용을 변경하여 건축심의 시 반영 	
<p>가로경관 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생으로 관목 등을 식재 하여 가로경관을 향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생으로 관목 등을 식재 하여 가로경관을 향상 	

구분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옥외 광고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로형 간판: 업소당 1간판원칙(전시장 제외). 단 도로 곡각지점은 1개 추가가능하며 1층은 판류형 입체간판설치, 2~3층은 입체형으로 제작하고, 최고층 상단부는 건축물의 상호 2개 이내에서 입체형으로 허용하나 파나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은 사용을 금지함, 가로 크기는 업소의 가로축 이내, 세로크기는 60~100cm 범위 내로 설치함 · 가로형 종합안내간판: 업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설치 ∴ 업소수가 많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가 설치 · 세로형 간판: 설치금지, 단 건물명만 표시가능 · 돌출형 간판: 1개소만 설치 · 상기 명시한 설치기준 이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설치는 광고물 관련규정(옥외광고물 등 관리법, 동법시행령, 경기도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)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로형 간판: 업소당 1간판원칙(전시장 제외). 단 도로 곡각지점은 1개 추가가능하며 1층은 판류형 입체간판설치, 2~3층은 입체형으로 제작하고, 최고층 상단부는 건축물의 상호 2개 이내에서 입체형으로 허용하나 파나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은 사용을 금지함, 가로 크기는 업소의 가로축 이내, 세로크기는 60~100cm 범위 내로 설치함 · 가로형 종합안내간판: 업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설치 ∴ 업소수가 많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가 설치 · 세로형 간판: 설치금지, 단 건물명만 표시가능 · 돌출형 간판: 1개소만 설치 · 상기 명시한 설치기준 이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설치는 광고물 관련규정(옥외광고물 등 관리법, 동법시행령, 경기도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)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	
조명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에 대한 보행자 관찰용 조명등 설치 ·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등 설치 ·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의해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보행자 관찰용 조명등 설치 ·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등 설치 ·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	
빗물이용 시설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물순환 체계를 바로잡고, 에너지 재활용,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‘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’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. ·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4조(권장설치대상)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. ·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고양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물순환 체계를 바로잡고, 에너지 재활용,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‘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’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. ·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4조(권장설치대상)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. ·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고양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	

■ 단계별 개발계획 (기정)

구 분	층 수	건축면적 (m ²)	건축연면적 (m ²)	건 폐율 (%)	용적률 (%)	최고높이 (m)
1단계(2014)	지하4층 ~ 3층	16,687.82	99,909.37	58.35	106.33	23.80
2단계(2020)	4층 ~ 6층	16,687.82	156,683.35	58.35	201.50	41.00

※ 주변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 개발계획필요

■ 단계별 개발계획 (변경)

구 분	층 수	건축면적 (m ²)	건축연면적 (m ²)	건 폐율 (%)	용적률 (%)	최고높이 (m)
1단계(2014)	지하4층 ~ 3층	15,633.37	99,753.41	55.44	105.42	23.00
2단계(2018)	4층 ~ 7층	16,035.20	158,027.57	56.86	219.39	46.50

※ 주변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 개발계획필요

□ 결정도 : 게재생략

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
2. 공고기간 : 2016.09.02. ~ 2016.09.19.(17일간)
3. 공고대상 : “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” 참조
4. 공고내용
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2팀 (☎031-8075-477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.

2016. 09. 02.

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

은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	은행정지명령 사 유	은행정지명령일자	비 고
1	48너24*5	싼타페	김*아	소유자 신청	2016.08.24	08.29.해제
2	22저91*6	S500L	이*덕	소유자 신청	2016.08.25	
3	82구45*5	포터 II	김*진	소유자 신청	2016.08.25	
4	15소85*4	BMW 530Xi	강*윤	소유자 신청	2016.08.26	
5	48두44*8	DS5 2.0 HDi	(주) 명장**실업	소유자 신청	2016.08.26	
6	04오51*2	SM7	강*효	소유자 신청	2016.08.29	
7	경기87라47*4	코란도밴	홍*흠	소유자 신청	2016.08.29	